



# *Web Contents*

---



2024년 04월 28일 01시 21분



##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사업

도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산모·신생아 건강증진 및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

- 사업기간 : 연중
- 지원대상 :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
-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금액(감면료)
  - 조리원 이용료(14일 기준) 1,540천원 중 70% 감면(1,078천원)
- 접수방법 : 공공산후조리원 전화, 우편, 방문접수(사전예약제)
- 접수대상 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 산모
  - 지원대상은 하단 감면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하여 접수
- 참고사항
  -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,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.
  -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.
  -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,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.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(제7조 관련)

###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

구분	1주(7일)	2주(14일)	3주(21일)	4주(28일)	비고
이용료	770천원	1,540천원	2,310천원	3,080천원	1주당 770천원추가
감면대상자 이용료	231천원	462천원	693천원	924천원	이용료의 70% 감면

### 감면 사유별 대상자 및 제출서류

감면사유	관계법령	확인서류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☑국민기초생활 보장법☑	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
차상위계층(상위 120%)	☑국민기초생활 보장법☑	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
제1급~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	☑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☑ 별표 1	장애인 증명서
국가유공자, 유족,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	☑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☑ 제6조 제3항	국가유공자(유족) 확인원
다문화가족의 산모	☑다문화가족지원법☑ 제2조 제1호	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	-	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미혼모	☑한부모가족지원법☑ 제4조 제1호 라목	주민등록등본, 혼인관계증명서
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	☑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☑ 제2조 제1호	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
5.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	☑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☑ 제5조	5.18민주유공자(유족) 확인원
귀농어·귀촌인	☑귀농어·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☑ 제2조	주민등록등본, 귀농어귀촌인 확인증

- 1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최저생계비 100%이내자
- 2) 차상위계층 : 최저생계비 120%이내자
- 3) 미혼모 (일반) : 최저생계비 130%이내자, 미혼모(청소년) : 최저생계비 100%이내자

### ✔ **감면대상자 산후조리원 이용 흐름도**

- 일반 이용자 : 공공산후조리원에 직접 접수
- 감면 대상자 : 공공산후조리원 사전예약 → 관할 보건소 방문접수하여 감면대상 확인서 발급 → 감면대상 확인서 제출(산후조리원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급여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(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6)

### ✔ **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**

- 1호점 : 해남병원(061-530-0114)
- 2호점 : 강진의료원(061-430-1010)
- 3호점 : 완도대성병원(061-550-1226)
- 4호점 : 나주빛가람종합병원(061-820-0854)
- 5호점 : 순천현대여성아동병원(061-729-8681)

문의전화 :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☎ 061-270-3215,8954

***MokPo - Si***  
***Web Contents***

